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조영덕 의원)

의안 번호	20-148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9 . .

발 의 자 : 조영덕, 강명숙, 김진천,
이민석, 채우진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명시되지 않은 보고서류 항목을 제출 대상에서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고 및 검사(안 제13조제1항)

- 제1호[보조사업을 개시(착공)한 때에는 사업개시(착공)보고서] 및 제2호(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) 삭제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 제6조

4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20. 10. 15. ~ 2020. 10. 19.

나. 붙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보고 및 검사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보조사업을 개시(착공)한 때에는 사업개시(착공)보고서</u></p> <p>2. <u>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</u>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(보고 및 검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

제6조(보고 및 검사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김현지
연 락 처	02-3153-8953